



「KB 청년도약계좌」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KB청년도약계좌

■ 상품특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상품

2 거래 조건

구 분	내 용
	■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에서 아래 가입대상 ①~④ 요건 확인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나. 사회복무요원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가입대상	② 개인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u>개인소득기준주미을</u> 충족하는 사람
	 가. <u>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u>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주2)}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u>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u>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주2)}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주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제12조제 3호가목에 따른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음 3 가구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 ^{주3)} 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 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일 것 나.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다. 가구원 ^{주4)} 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주민 등록표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 할 수 있음) 주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주4)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주5)}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주6)}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주5)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하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처리 주6)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가입신청(가입자격확인신청):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대상여부 조회 및 확인을 신청하는 절차 산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 확인 후 가입대상자 안내※ 안내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397)에 문의 적금가입: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해 지정된 기간 내 가입※ 지정된 기간 내 적금을 미가입한 고객은 다시 가입신청을 진행해야 함 □ 일시납입 신규 ■ 			
일시납입 방법: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이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완료하고, 해당 적금가입 기간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일시납입하여 가입(최소 납입금액 200 만원) 일시납입 신청: 적금가입을 원하는 금융기관에 가입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ylaccount.kinfa.or.kr)에 일시납입 정보 [®] 를 등록해야 일시납입 신청이 완료됨 주) 일시납입금액, 일시납입기간 등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청년희망적금 보유자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해지 전 가입신청은 가능) 개인사업자 및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공동명의 불가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만 사용 가능 			
■ 자유적립식 예금			
■ 가입신청(가입자격확인신청): KB스타뱅킹, 영업점 ※ 본인 명의 휴대폰 미소지자, 외국인 등 필요 시 영업점 신청 가능 ■ 적금가입 및 해지: KB스타뱅킹, 영업점 ※ 외국인은 영업점에서만 신규 가능			

계약기간 60개월 ■ 회차별 최소 1 천원 이상 1 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 만원 이하 ※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 연간^{주1)} 납입한도 840 만원 이내 납입 가능 주 1) '23.7.10 가입 시 1 년차('23.7.10~'24.7.9), 2 년차('24.7.10~'25.7.9), 3 년차('25.7.10~'26.7.9), 4 년차('26.7.10~'27.7.9), 5 년차('27.7.10~'28.7.9) ■ 일시납입 신규 시 저축금액 ①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일시납입 가능(최소 납입금액 200 만원) ② 가입일부터 2개년주의 동안 납입금액의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 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납입중지 처리 및 정부기여금 미지급 저축금액 ④ 일시납입기간 동안 추가 납입 불가 ※ 최초 납입한 일시납입금액 만큼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주3)으로 매월 전화납입되는 구조로 일시납입기간 동안 추가납입 할 수 없음 (예시) 매월 50만원, 13개월, 총 650만원 일시납입 신청 가입일 1년차 2년차 일시납입 기간 추가납입 - '25.3.22~3.31 기간중 월 70만원 이내 '24.2.22 '24.2.22 '25.2.22 '24.2.22 납입 가능 ~'25.2.21 | ~'26.2.21 ~'25.3.21 - 만 13개월 경과 후부터 추가납입 가능 주2) (예시) '24.2.22 가입 시 2개년 '24.2.22~ '26.2.21 주3) 일시납입금액 선납 시 일시납입기간 동안 매월 납입하는 금액으로, 고객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일시납입 정보 등록 시 40·50·60·70만원 중 선택한 금액 ■ 입금거래 정정(취소·변경 등)은 제한될 수 있음 기간 기본이율 연 4.5% 최초3년간 기본이율 적용금리 변경시점에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3년 초과~ (세금공제 전. 본 적금의 고시이율 적용 5년 이내 2024.4.1 기준) ※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고,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 기본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이율: 최고 연 1.5%p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적용 ※ 우대이율은 아래 항목별 제공조건 충족 및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 우대이율 우대이율 제공조건 적용이율 (세금공제 전.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급여이체 연 0.6%p 2024.4.1 기준) 급여주1) 입금 월수가 36회 이상인 경우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본인 명의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아래 ① 또는 ②의 자동 자동납부 연 0.3%p

이체 출금이 발생한 경우

			① 월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 ^{주2)} 월수 36회 이상	
			② 청년도약 LTE 요금제의 자동이체 출금 월수 36회 이상 ^{주의}	
	거래감사	연 0.1%p	계약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주4) 신규 가입 고객 또는	
		2 0.1%p	가입일 기준 KB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고객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확인된 개인소득 금액의	
	소득플러스	최고 연 0.5%p	소득요건주)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	
	_ <u> </u>		ㅇ 5회 : 연 0.5%p / 4회 : 연 0.4%p / 3회 : 연 0.3%p /	
			2회 : 연 0.2%p / 1회 : 연 0.1%p	
	주 1) 급여 인정 세부 기준 (※ 당행 본인계좌로부터의 이체 실적은 제외) -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의 지정된 급여일(전후 1 영업일 포함 3 영업일)에 건별 50 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에 적요(월급/급여/수당/급료/상여/보너스/봉급/연금/성과급/보로금/임금/Salary/bonus/pay)가 기재된 건별 50 만원 이상의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이체 계약(신청)에 의해 당행 급여이체 전산(급여성 선일자, 급여성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건별 20 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주 2) 공과금 자동이체 인정 세부 기준 - 계좌 거래내역 중 거래유형(거래구분)이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FBS 인 출금건에 한함 ※ 거래유형(거래구분)이 상기 외 출금 건인 경우 제외(국민카드, 공과금 등), 계좌간자동이체 출금 건			
	제외 주 3) 본인 명의로 KB Liiv M「청년도약 LTE 요금제」개통 후 요금제 해지일까지 자동이체 출금 월수 36 회이상 발생한 경우 (단, 1 개월 이상 요금제 정지시, 정지기간 중 출금건은 자동이체로 인정하지 않음)주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주 5) 총급여기준 2,400 만원 이하, 종합소득기준 1,600 만원 이하인 경우 [표 1.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상 개인소득구간이 1 구간에 해당하는 고객			
최종이율 (세금공제 전,	■ 최저 연 4.5% ~ 최고 연 6.0% ※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4.4.1 기준)	이율을 적용하고,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 최종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 미만 절사) [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입금일 ~ 만기일 전일)/365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	1회차 2회차 3회차 · · · 마지막회차 만기일			
			□금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365	
계산방법 (산 출근 거)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365 	
\c2c'1			- 10007/70712/277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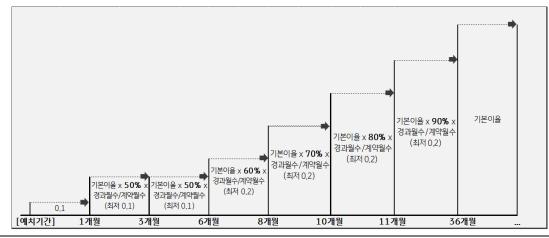
•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이율 적용 (단위: 연%)

	(EII: E 70)
예치기간	이율
1개월미만	0.1
1개월이상 ~ 3개월미만	기본이율 X 5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1)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기본이율 X 5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1)
6개월이상 ~ 8개월미만	기본이율 X 6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2)
8개월이상 ~ 10개월미만	기본이율 X 7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2)
10개월이상 ~ 11개월미만	기본이율 X 8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2)
11개월이상 ~ 36개월미만	기본이율 X 9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2)
36개월이상	기본이율

중도해지이율 (세금공제 전, 2024.4.1 기준)

- 1.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본이율(기본이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부터 변경된 기본이율 적용)
- 2. 경과월수: 입금일 다음날부터 해지월 입금 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절상
- 3. 계약월수: 신규일 다음날부터 만기월 신규 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절상 ※ 단, 계약기간이 월단위인 경우 계약 월수를 그대로 사용하며, 경과 월수는 계약 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 4.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미만 절사)
 - ※ 입금건별 중도해지이율 계산 산식: 기본이율 X 예치기간별 적용률(50~9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예치기간 36개월이상 구간은 기본이율 적용)

중도해지 이자계산 방법 (산출근거)



만기후이율 (세금공제 전, 2024.4.1 기준)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단위: 연%)

경과기간	이율
만기후 1개월이내	기본이율 X 50%
만기후 1개월초과 ~ 3개월이내	기본이율 X 30%
- 만기후 3개월초과	0.1

- 1.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본이율
- 2.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 해당사유 발생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특별해지사유신고서에 명시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신청

- 해당사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자의 폐업
 -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마.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바. 가입자의 주택 취득주1)
 - 사.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 ※ 주1)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소득세법」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
- 적용이율: 기본이율 적용(※ 우대이율 제외)
- 세제혜택: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일시납입 신규한 계좌를 일시납입 기간 종료 전 특별중도해지 할 경우 가입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만 지급

세제혜택

특별중도해지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 ※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2 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
-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시 이자소득과 함께 100% 지급 또는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후 중도해지시 이자소득과 함께 60% 지급 단,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 미지급**

[표1]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구간			정부기여금(I) 산정	정부기여금(I)	월
소득 구간	총급여기준	종합소득기준	기준금액	지급비율	최대 기여금
1	2,400 만원 이하	1,600 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 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I) 산정 기준금액의 6.0%	24,000 원
2	2,400 만원 초과 3,600 만원 이하	1,600 만원 초과 2,600 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 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I) 산정 기준금액의 4.6%	23,000 원
3	3,600 만원 초과 4,800 만원 이하	2,600 만원 초과 3,600 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I) 산정 기준금액의 3.7%	22,200 원
4	4,800 만원 초과 6,000 만원 이하	3,600 만원 초과 4,800 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 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I) 산정 기준금액의 3.0%	21,000 원
5	6,000 만원 초과	4,800 만원 초과		미지급	

개인소득 구간			정부기여금(II) 산정	정부기여금(II)	월
소득 구간	총급여기준	종합소득기준	기준금액	지급비율	최대 기여금
1	2,400 만원 이하	1,600 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 중 40만원 초과금액	정부기여금(II) 산정 기준금액의 3.0%	9,000 원
2	2,400 만원 초과 3,600 만원 이하	1,600 만원 초과 2,600 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 중 50 만원 초과금액	정부기여금(II) 산정 기준금액의 3.0%	6,000 원
3	3,600 만원 초과 4,800 만원 이하	2,600 만원 초과 3,600 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 중 60 만원 초과금액	정부기여금(II) 산정 기준금액의 3.0%	3,000 원
4	4,800 만원 초과 6,000 만원 이하	3,600 만원 초과 4,800 만원 이하		미지급	
5	6,000 만원 초과	4,800 만원 초과		미지급	

정부기여금 (계속)

■ 정부기여금의 산정

- ① 정부기여금은 가입신청(가입자격확인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확인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주)}. 단,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확인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주)}됨
 - ※ 주) (예시) '23.7.10 일 가입 시 5 년 동안 정부기여금 적용기간 1 년차('23.7.10~'24.7.31), 2 년차('24.8.1~'25.7.31), 3 년차('25.8.1~'26.7.31), 4 년차('26.8.1~'27.7.31), 5 년차('27.8.1~'28.7.9)
- ② 개인소득 확인은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소득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확인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
- ③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상 총급여(과세 대상급여)액, 종합(결정)소득금액 및 연말정산한 사업·연금·종교인 소득금액 모두 소득없음으로 확인된 연차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플러스 우대금리 충족횟수에서도 제외됨
- ④ 「소득세법」제 12 조제 3 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 제 12 조제 3 호가목에 따른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소득으로 인정받아 가입한 경우 소득구간 1을 적용함(가입 후 1 년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확인결과에 따라 이후 지급비율 변동 가능)
- ⑤ 일시납입 신규 시 일시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일시납입한 달에 적용된 지급비율을 일괄 적용함

■ 유의사항

- ①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② 정부기여금의 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기본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③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중도해지 후 재가입 하는 경우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④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⑤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⑥ 일시납입 신규한 계좌를 일시납입 기간 종료 전 특별중도해지 하는 경우 잔여기간(일시납입 기간에서 가입유지 기간을 차감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환수됨 상품 특약에 동의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기여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재가입 가능** -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가입신청(가입자격확인신청) 가능** (※ 재가입 시에도 만기는 동일하게 5년) - 가입신청(가입자격확인신청) 확인 결과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 결정 - 일시납입 신규한 계좌 해지 후 재가입 시 일시납입 신규 불가 ■ 재가입 계좌의 정부기여금 -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계약기간에서 기(旣) 가입기간만큼 차감한 비율 **(이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원 미만 절사) ※ 조정비율 = (계약기간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 기 가입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납입한 경우에도 기 가입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재가입 ※ 가입기간: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올림한 기간으로, 및 가입기간 산정은 '월' 기준이며 일단위는 월로 올림하여 계산 '23.8.1 가입 후 '23.9.15 해지 → 재가입시 2개월을 차감하여 계산한 조정비율적용 조정비율 적용 ㅇ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각각의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합산 ㅇ 가입 당일 해지한 경우 가입기간을 1개월로 계산 [예시] 개인소득 1구간 대상자가 '23.7.5 가입 및 '23.8.31 중도해지 후 재가입 시 ○ **조정비율 96.6%** (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절사) ⇒ (60개월-2개월)/60개월x100%=96.6666···% ○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 최대한도 월 23,184원 **⊃** ●(40만원×6.0%)×●96.6%=월 23,184원 ※ ● 1 구간 대상자 정부기여금 지급 최대한도 ② 재가입 시 조정비율 재가입 및 조정비율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397)에 문의

해지방법

■ 비대면으로 신규한 계좌는 만기 자동해지의 신청없이 만기일에 자동해지되어 근거계좌(국민은행 출금계좌)로 입금됨 (단, 예적금에 압류 등 해지제한 사유가 있거나 미성년자, 임의단체, 비거주자, 공동명의 예금은 제외)

■ KB 스타뱅킹 및 영업점을 통해 해지

	■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만기해지가 되지 않으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포함)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주가, 가압류주가, 질권주차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주 1)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됨 주 2)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 주 3) 질권설정: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됨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자동이체	■ KB 국민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함			
재예치	불가	일부인출	불가	
질권설정	가능	양도	불가	
명의변경	불가	만기앞당김지급	불가	
담보제공	■ 가능 : 예금담보대출은 계좌잔액의	95%까지 가능		
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에 출연^{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주)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함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사용하지 않는 소액계좌를 잔고 이전/해지 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 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주1)} 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 ^{주2)} 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부담 없이 해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 1)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 17 조 제 3 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 18조 제 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 19조 제 1,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 20 조 제 1 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 21 조) 주 2) 해지요구서: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자료열람요구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 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상품 가입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포함 ※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납입금액에 대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알아두실 사항 ■ 일부해지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적금 가입 시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유의 사항

- 이 적금은 'KB 국민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19 조제 1 항, 동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 제 3 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수신상품부(P)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9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kbstar.com),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